

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

WEEKLY NEWSLETTER

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



말레이시아, 트랜스지방산의 식품 내 최대 함량 기준 설정 및 식품 규정 개정 공고



SPS

이슈 바로가기 ▶

-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세계무역기구(WTO) 공지「G/SPS/N/MYS/57」를 통해 《말레이시아 식품 규정 1985(PU(A)437/1985)》에 식품 내 트랜스지방산(Trans fatty acid, TFA)의 최대 함량을 규정하는 '신규 조항 38B'를 추가할 예정이며, **2024년 1월 16일까지**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힘
- 주요 내용(신규 조항 내용)
 - 배경
 - 세계보건기구(WHO)는 트랜스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비전염성 질환(뇌, 심혈관 질환, 암 등)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의 식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것을 권고함
 -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부분경화유 등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의 식품 내 함량을 총 지방 함량의 2%이하로 규제함
 - 이번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개정안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을 따른 것임
 - 대상 품목: 말레이시아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
 - 말레이시아에서 규정하는 식품 내 트랜스지방산 최대 함량 기준

성분	최대 함량 기준	비고
트랜스지방산 (Trans fatty acid)	총 지방 100g 당 2g 이하 (총 지방 함량의 2% 이하)	※ 동물성 트랜스지방산은 규제 적용 제외

4) 시행일: **2024년 1월 16일까지** 의견 수렴 후 공포 예정

출처:EPINGALERT, G/SPS/N/MYS/57, 2023.11.17

베트남, 한국 건강기능식품의 수입허가 갱신 절차 간소화

- 2023년 11월 베트남 식품청(VFA)은 한국에서 수출된 건강기능식품이 제품의 변경 사항으로 수입허가서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, 안전과 관련이 없는 변경 사항에 대해 수입허가 갱신 요건을 면제한다고 밝힘
 - 주요 내용
 - 배경
 -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변경 사항이 발생 시 수입허가서를 갱신해야 하는 베트남의 사전 수입허가 절차가 한국 건강기능식품 수출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함
 -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식품청과 수입허가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함
 - 협이는 글로벌 식품 환경 및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식품 규제 기관장 협의체(APFRAS, 이하 '아프라스') * 를 통해 진행되었음
 - 대상 품목: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 건강기능식품
 - 사전 수입허가 요건 변경 사항
- *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 기관장 협의체(APFRAS): 글로벌 식품 환경 및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, 뉴질랜드, 베트남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중국, 싱가포르의 식품 규제 기관들이 연대한 세계 최초 식품 규제 기관장급 협의체
- 기본 요건: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베트남 식품청에 식품안전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하여 수입허가서(CÔNG BỐ(공보))를 받아야 하며, 수입허가서는 제품별로 신청해야 함
 - 갱신 요건



수입통관

이슈 바로가기 ▶

[기준] 수입허가서 갱신 요건	[변경] 수입허가서 갱신 요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입허가서 발급 후 제품의 원료나 디자인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으로 제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수입허가를 갱신해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입허가서 발급 후 제품의 원료나 디자인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으로 제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수입허가를 갱신해야 함 단, 제품의 디자인, 패키지 등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사항일 경우, 수입허가서를 갱신하지 않고 변경된 제품의 사진 (또는 디자인 조감도)를 제출해도 됨

출처:식품의약품안전처, 아프라스로 맺은 협력, 국내 식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로 이어진다, 2023.11.20